

알아두어야 할 가족법 상식

친자

●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식이 아닌 경우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식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. 친생부인의 소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에 대해서는 1997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상실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.

●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

남편은 아내의 승낙없이도 자기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밝혀서 혼인외의 자식으로 입적시킬 수 있다. 아내의 인격을 무시한 이 법은 고쳐져야 한다.

● 첨이 낳은 아이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

본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여 아이의 어머니란에 기재된 본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.

● 처가 데리고 온 아이를 입적시켜 준 경우

아내가 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자기 자녀로 입적시켜 준 남편은 그 아이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.

이 소송은 자녀가 할 수도 있는데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.

●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을 때

아이가 없어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그 호적에서 빼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녀쪽



누구라도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.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.

● 계모와 전처 자녀의 법적관계는

전에는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와 전처가 낳은 자녀 사이에 법정 모자관계를 강제하여 친권, 부양, 상속 등 법적권리를 부과했었으나, 개정법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자 사이로 하고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버지의 아내로서 인척관계가 된다.

● 처와 혼인외 자 사이의 법적관계는

전에는 혼인외 자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면 아버지의 처와 당연히 법정모자관계가 발생하여 친권, 부양, 상속 등의 권리 의무가 강제되게 했던 것을 고쳤다.

이 경우 자녀 친권에 대해서는 생모에게도 아버지와 대등하게 친권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,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준다.

●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은

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.

그러나,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.

이때, 무조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. 이 경우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다.